해평윤씨(海平尹氏)의 한문 상언(上言)

한 길 연*

1

조선시대 여성이 임금에게 상소하는 일은 그리 흔치 않은 일이다. 또 그 흔치 않은 상소문 중 현재까지 남아 있는 자료는 더욱이 드물다.[1] 그런데 본고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해평윤씨(海平尹氏)의 경우에는 세 차례나 상소한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전주이씨(全州李氏) 영해군파(寧海君派) 집안에서는 선조들의 유고(遺稿)를 묶어 『이가세고(李家世稿)』라는 거질(巨帙)의 책으로 보관하고 있는데,[2] 이 중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경숙, 「조선후기 여성의 정소활동(呈訴活動)」, 『한국문화』 34(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2005), pp.89~123.

2) 『이가세고(李家世稿)』는 전주이씨 영해군파 가운데서도 강녕군파(江寧君派)에서 전해오는 선조들의 유고를 묶어 만든 책이다. 여기에는 이정린(李廷麟)의 「죽와유고(竹窩遺稿)」, 이언경(李彦經)의 「천유재유고(天游齋遺稿)」, 이춘제(李春躋)의 「중은재유고(中隱齋遺稿)」, 이창급(李昌伋)의 「일와옹유고(一臥翁遺稿)」, 이창임(李昌任)의 「신천옹유고(信天翁遺稿)」, 이선정(李宣鼎)의 「수목수초(水目收草)」, 이헌정(李憲鼎)의 「필천수습(泌泉收拾)」, 이돈기(李敦器)의 「삼재유고(三齋遺稿)」, 이석팔(李錫八)의 「오당유고(五堂遺稿)」 등 총 9편의 문집이 실려 있다. 이 밖에도 『완산이씨가승(完山李氏家乘)』이 별도

「수목수초(水目收草)」에는 이 집안의 며느리인 해평윤씨가 쓴 상언(上言) 3편이 각각의 〈이조회계(吏曹回啓)〉와 더불어 실려 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의 정치적 격동기 속에서 한 여성이 세 번씩이나 임금에게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던 사연과 이러한 기록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해평윤씨(1731~1813)의 삶을 대략 검토해 보면, 그녀는 윤택현(尹澤顯)의 딸이자 이창임(李昌任, 1730~1775)의 부인으로, 이창임의 첫째부인인 남양홍씨(南陽洪氏)가 1756년에 죽자 1757년에 재취로 들어간다. 그런데 1775년 을미년(乙未年)에 남편 이창임이 병사(病死)하는 변고를 겪는다.[3] 게다가 그 이듬해인 1776년 병신년(丙申年)에는 이창임이 역모죄에 소급되고, 그 형인 이창급(李昌伋)마저 동생의 일에 연루되어 삭탈관직(削奪官職)되는 가운데 가문 전체가 폐족(廢族)당하는 불행을 겪는다. 이창임은 환관(宦官) 김수현(金壽賢) 등과 결탁하여 역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대사간직(大司諫職)을 추탈(追奪)당하고, 이창급 또한 이에 연루되어 정주목사직(定州牧使職)을 삭탈당하게 되는 것이다.[4] 이러한 급작스런 변고 속에서 해평

로 전해지고 있다. 이 문헌들에는 조선후기 사회문화사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기록들이 많이 실려 있다. 우선 전주이씨 영해군파 가문은 3대에 걸쳐 대사간을 역임한 집안으로, 이들 문헌에는 다량의 산문 혹은 한시가 실려 있다. 또한 사천(槎川) 이병연(李秉淵), 이계(耳谿) 홍량호(洪良浩), 겸재(謙齋) 정선(鄭敾) 등의 당대 명사들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했던 집안으로, 이 문헌들에는 이들과 교류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다.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들 문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소중한 자료들을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광철(李侊澈) 종친회장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3) "갑오년에 안주목사에 제수됐는데 그 다음해에 병환으로 집에 돌아오셨다가 7월 22일 신시에 장동집에서 작고하셨다.(甲午拜安州牧使, 翼年以病歸, 七月二十二日辛時, 卒于壯洞第)"(〈십이세신천옹공사적약기(十二世信天翁公事績略記)〉, 『완산이씨가승』, 302장 앞면).

윤씨는 남편을 따라 죽을 결심까지 하나 이창임이 생전 계후(繼後)로 삼은, 이창급의 장자인 이선정(李宣鼎)의 효성에 힘입어, 또 남편을 신원(伸寃)하겠다는 일념으로 마음을 추스르고 한 많은 세월을 보내게 된다.[5]

그녀는 남편이 원사당한 이후 30여 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남편을 신원키 위해 〈을축상언(乙丑上言)〉[6], 〈병인상언(丙寅上言)〉[7], 〈정묘상언(丁卯上言)〉[8] 등 세 차례에 걸쳐 순조에게 글을 올리게 된다. 이 세 개의 상언 중 맨 처음에 올린 〈을축상언〉과 바로 뒤에 첨부되어 있는 〈이조회계〉의 원문을 소개하기로 한다.[9]

---

4)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박상로(朴相老)·조재흥(崔載興) 등은 임오년의 일[임오화변]을 징토한다는 핑계로 환관(宦官) 이흥록(李興祿)·김수현(金壽賢) 등과 비밀히 결탁한 후 정조가 춘저에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알렸는데, 정조는 그 때 어린 나이였지만 그들의 간악상을 알고는 마음속으로 미워하였다. 영조가 승하하자 이들은 시골 유생 이일화(李一和)를 시켜 상소하여 임오년 일을 다시 말하게 하고, 이덕사(李德師)도 상소하게 된다. 정조는 "이는 선왕[영조]을 무함한 역적이다"라고 하며 친국하기에 이르는데, 이 때 김수현의 초사(招辭)에서 이창임이 관련되었다는 말이 나옴에 따라 이창임 또한 이 일에 연루된다.(이에 대해서는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4월 26일 조목과 『정조실록』 정조대왕행장 ②에 상세히 나와 있다).

5) "병신년에 가화(家禍)를 만나자 후비인 윤부인께서는 그날부터 물도 드시지 않고 맹세코 죽어서라도 남편의 무고함을 신원할 것을 계획하셨다. 호흡이 위태롭게 되시자 부군[이선정(李宣鼎)]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힘써 만류하여 말씀하시기를 '우러러 믿을 분은 위에 계신 성명한 군주이시니 오직 천심(天心)이 회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화를 입은 집안이 회운하면 큰 복을 얻는 곳이 됩니다. 의리로 볼 때 이것이 십분 도리에 맞습니다.'라고 밤낮으로 읍혈 간언하자 윤부인께서 이에 감동하고 깨우쳐 죽을 마음을 그치셨다.(丙申遭家禍, 所后妣尹夫人, 自其日不進勺水, 誓死伸誣爲計, 氣息凜綴. 府君涕泣力挽曰, '仰恃者, 聖明在上, 惟俟天心悔, 禍家運回, 泰律之處, 義此爲十分道里.' 晝宵血懇, 尹夫人乃感悟而止)"(〈참판공유사(參判公遺事)〉, 『완산이씨가승』, 340장 뒷면~341장 앞면).

6) 「수목수초」, 『이가세고』, pp.1784~1786.

7) 「수목수초」, 『이가세고』, pp.1786~1787.

8) 「수목수초」, 『이가세고』, pp.1788~1889.

2

〈을축상언(乙丑上言)〉

삼가 아뢰옵니다. 저는 망부(亡夫)가 죄를 입은 뒤 끝없는 천지처럼 지극한 고통을 품고 숱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오히려 능히 한 마디 말도 우러러 드러내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선대왕[정조(正祖)]의 지극히 어질고 지극히 밝은 덕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밝혀주지 않음이 없고 어떤 사물이라도 완수해주지 않음이 없기에 마침내 복분(覆盆)[10]에도 빛이 비추어지기를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경신년(정조 24년 · 1800년) 봄 망부의 형인 전 승지 이창급(李昌伋)의 세초(歲抄)[11] 단자가 이르자, 오히려 그간 거론되지 않았으나 이제 특명으로 그 죄를 다 씻어주고 서용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전후의 이러한 연교(筵敎)[12]는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만약 선대왕의 만물을 환히 비추시는 현명함이 근본 되는 일[망부와 인]에도 미쳤다면, 그 밝게 신원시켜 주시는 은혜가 조석(朝夕) 사이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저승에서나 이승에서나 감격하면서 온 집안이 축하하였을 터인데, 천만 뜻밖에도 6월에 갑

9) 세 개의 상언이 매우 흡사하다. 그 중 처음에 올린 〈을축상언〉이 가장 상세하기에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0) 복분(覆盆) : 엎어진 동이라는 뜻으로 빛이 들어오기 힘든 경우 즉 역모죄 등에 걸려 임금의 은애(恩愛)를 다시 입기 힘든 경우를 상징할 때 쓰이는 말이다.

11) 세초(歲抄) : 조선시대에 6월과 12월의 인사이동에 앞서 허물이 있는 관원의 이름을 적어서 국왕에게 올린 문서이다. 임금이 이 세초에 표시를 하여 허물이 있는 벼슬아치를 강등(降等)하거나 서용(敍用)했다.

12) 연교(筵敎) : 임금이 연석(筵席)에서 내리는 하교를 말한다.

자기 선대왕께서 승하하시는 변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 애통함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보통 사람의 백배나 되었고 지하의 원혼 역시 장차 우러러 바랄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 나이가 팔십에 가까워 수명이 장차 다하려 합니다. 그런데도 끝내 한 번도 오열하여 호소하지 못한다면 진실로 이 일이 선대에 속한 것이기에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 없을까 두렵습니다. 비록 우리 주상전하께서 천지처럼 크고 일월처럼 밝으시더라도 무엇을 좇아 그 만의 하나라도 굽어 살필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이에 미치자 더욱 가슴이 막힘을 이기지 못하였으니,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으려 해도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임술년(순조 2년 · 1802년) 봄에 재상부에 글을 올렸습니다. 고인이 된 영의정 심환지 · 좌의정 이시수 · 우의정 서용보가 그날로 상언 단자를 받아 시임대신 · 원임대신들과 돌려보고서 이것이 이미 지극히 원통한 일에 관계되니 마땅히 주상전하께 아뢰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저는 매번 빈대(賓對)[13] 날에는 몸소 궐문 밖에 나아가 재상들에게 조정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를 울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계해년(순조 3년 · 1803년) 정월에 이르러 경사를 축하하는 때 주상전하께서는 특별히 필부(匹婦)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궐 밖에 있는 가마에 이르러 물어보셨습니다. 덕스런 뜻이 넘쳐흐르고 은혜로움이 하늘처럼 크고 넓으셨습니다. 마침 그 때 궐문 밖에는 가마가 2대가 있었습니다. 대신들이 주상전하의 교지를 받들어 그 하소연함을 살펴보았는데, 하나인즉 그 사뢰는 바가 외람되고 법을 넘어선다고

13) 빈대(賓對) : 매달 여섯 차례씩 정승, 대간, 옥당(玉堂)들이 임금 앞에 나가 정무(政務)를 보고하던 일을 말한다.

여겨 깨우쳐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렸던 상언 단자에 이르게 되었으니 이는 전일에 재상부에서 받아놓은 것이었는데, 전례에 의거해서 다시 비변사에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에 이르도록 오히려 진퇴가 없으니 이것은 저의 몸이 죄가 많아 신명을 감동시키고 정성을 밝히기에는 믿음직하지 못한 소치가 아님이 없습니다. 몇 십 년 세월 동안 쌓인 원통하고 한스러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드러내고자 하는 소망이 이 생애,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끊긴 줄 알았는데, 지금 잠시 죽지 않고 3년 전에 이어 다시 주상전하의 교외 행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또 감히 재상부에 올린 단자로써 죽음을 무릅쓰고 주상전하의 수레 앞에서 울부짖습니다.

지난 병신년(정조 즉위년 · 1776년) 환관의 공초(供招)로 인해 망부는 죄를 입었습니다. 대개 옥당 정원시(鄭元始) 등의 무리들이 고(故) 대사간 이창임이 조정의 선비로서 이름이 환관의 공초(供招)[14]에서 나왔기에 그 징토를 엄중하게 하는 뜻으로 이미 죽은 몸이라도 죄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관작을 추탈하기를 진술했던 것이었습니다. 선대왕께서 윤허하시기를 이창임이 덕성합[사도세자]에 입대(入對)[15]할 때에 ("역적이고 소인이다"라고) 책망하는 하교가 이미 이창임의 동료였던 조유진(趙維鎭)과의 사이에서 내려졌던 일이 있으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16]

---

14) 공초(供招) : 죄인이 범죄 사실을 진술한 말을 말한다.

15) 입대(入對) : 임금 혹은 세자에게 진알(進謁)하고 그 자문(諮問)에 응하는 일을 말한다.

16) 정원시가 주달한 내용과 정조가 이를 윤허한 내용은 실록에 다음과 같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응교 정원시(鄭元始) 등이 아뢰기를, '고 대사간 이창임(李昌任)은 조사(朝士)가 된 몸으로 반역한 환관과 결탁하여 정상과 흔적이 간사하고 비밀스러웠

언급된 환관의 공초란 곧 김수현(金壽賢)이 죄를 진술한 말 중 10여 년 전 이흥록(李興祿)이 아무개 아무개가 가히 쓸 만하다고 말한 부분으로, 거기에 거론된 공경대부의 수가 허다하였고 송재경·김상묵·채제공·심이지·조종현 등이 그 공초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죽은 남편의 이름 또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자는 조정에서의 심문도 받지 않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났고 혹자는 잠시 심문을 받았으나 곧 사면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렇기에 아무개 아무개는 한 번도 그릇 죄에 걸림이 없이 관작과 녹봉이 예전과 같아 몸과 명예가 모두 온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남편은 밝게 증명할 수 없어 홀로 죄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단지 그 몸이 작고한 연고로 결백함을 밝힐 수 없었는데, 유독 정원시(鄭元始) 등의 무리들이 이 기회를 틈 타 (홍국영의) 사주를 받아 망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당초 요괴로운 늙은이라고 운운한 것은 오로지 문서에서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원시 등의 무리들은 조정의 진신(搢紳)들을 매수하여 은총과 이익의 계책을 도모함에

으며, 진신(搢紳)들 사이에 있어서도 성세(聲勢)를 떠벌리고 요망한 말을 조작해 내는 짓을 하여, 저절로 무망(誣罔)함으로 돌아간 실상이 여지없이 탄로되어 이미 천만 번 헤아리기 어려웠는데, 전후에 주무(綢繆)한 정절이 요망한 환관 김수현(金壽賢)의 공초에서 빈번하게 나왔습니다. 징토를 준엄하게 해야 하는 의리에 있어 이미 죽었다고 하여 논하지 않을 수 없으니, 청컨대 관작을 추탈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창임의 죄상을 이루 주토할 수 있겠는가? 조재한(趙載翰)보다도 더하고 이흥록(李興祿)보다도 더하며 이수진(李守鎭)보다도 더하다. 주무한 정상이 특히 그 당일 이후에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간사하고 소견이 좁은 작태가 그 당일 이전에도 드러났었다. 아! 덕성합(德成閤)에 입대(入對)할 때에 역적이고 소인(小人)이라고 꾸짖는 하교가 이미 반료(伴僚) 조유진(趙維鎭)과의 사이에서 내려졌던 일이 있으니, 내가 반드시 이 창임을 통쾌하게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곧 선대왕의 뜻을 뒤따르기 위함이다. 나 자신도 모르게 엄억(掩抑)하게 되어지는데 어찌 머뭇거릴 것이 있겠는가? 아뢴 대로 하라.'"(『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4월 26일).

사특함이 무자비하고 악함이 교묘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대왕의 밝으신 통찰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기에 망부의 이름이 이르자 선대왕께서는 "나는 믿지 못 하겠다"라고 하교하셨습니다.[17] 죽은 남편이 비록 스스로 결백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보다 더하지 않을 것이니 어찌 지하에서 감동하여 울지 않았겠습니까? 저 괴이한 무리들이 체결한 것은 실로 병신년(정조 즉위년 · 1776년)의 일이고 망부는 계사년(영조 49년 · 1773년)부터 외읍에서 죄를 청하기를 기다리다가[18] 이미 작고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처음에 논의할 만한 일이었겠습니까?

덕성합[사도세자]께서 꾸짖는 하교인즉, 망부의 죄명의 관건이 된 것 같습니다. 신사년(영조 37년 · 1761년) 여름에 망부가 궁관으로서 입대할 때에 덕성합께서 "급히 춘천에 가서 조판부[조재호(趙載浩)]에게 거동할 것을 권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에 망부가 "신이 어찌 가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덕성합께서 "무엇을 꺼

17) 『정조실록』 정조 즉위년 4월 1일 조목과 5월 25일 조목에서 정조가 김수현 등과 관련된 조정 신하들을 처벌하기를 주저하는 대목이 나온다. 또 〈병인상언〉, 〈정묘상언〉에서도 비록 이창임이 죄명을 입는 것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추국 받을 당시 이창임에 관한 일을 믿지 못 하겠다고 말한, 정조의 은혜로운 하교가 있었음을 강조하여 언급하고 있다.

18) 이창임이 계사년에 영광군수(靈光郡守)에 제수된 지 1개월이 되었을 때 목사 원의손(元義孫)이 조정에 알리지 않고 그를 파직시킨 일에 대해 대간들이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청죄(請罪)해야 한다는 계(啓)를 올렸던 일을 말한다. "이창임은 계사년에 영광군수의 직책을 부여받았는데, 1개월이 되었을 때 새로운 목사(牧使) 원의손(元義孫)이 의리를 좇아야 한다고 하며 장계를 내려 파직시키자 마침내 그만두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임금께서는 목사가 사소한 것을 혐의하여 크게 일을 만드는 것에 불평한 기색을 표시하셨다. 후에 대간(臺諫) 9명이 청죄해야 한다고 사뢰었다.(癸巳拜靈光郡守之官, 一月因新使元義孫, 將引義狀罷, 遂撤歸京第矣. 上以道臣之以些嫌使氣大, 示未安, 后臺者九, 啓請罪)"(이창급, 〈망제신천옹행록(亡弟信天翁行錄)〉, 「일와옹유고」, 『이가세고』, p.1366).

리어 가지 않느냐?"라고 명령하시면서, 꾸짖는 하교가 엄중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망부가 "군명이 계신 곳에 어찌 평탄하고 험준함을 가리겠습니까마는 한 궁관이 명령을 받들어 외방으로 나감에 대조[영조]께 아뢰지 않는다면 좋지 않은 일에 관계될까 두려우니 어떠하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덕상합께서 말씀하시기를 "과연 그러하다. 과연 그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인하여 계방(桂坊)[19] 관리였던 조유진(趙維鎭)을 보내도록 명하셨으니 조유진은 조재호의 조카로[20] 이 때 음관이었습니다. 당초에 격노하신 것은 비록 말이 그 뜻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으나 곧 깨달으시어 진노한 모습이 얼음 녹듯 풀어지셨으니 우러러 그 어지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시말(始末)은 이와 같은 것에 불과하니 구구한 말을 줄이고 한 마디로써 말하건대, 만약 망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면 어찌 당일에 엄하게 처치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아끼고 사랑하시어 일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셨겠습니까? 즉석에서 뉘우치시는 하교가 있지 않았다면 어찌 감히 망부가 본직인 춘방[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에 있으면서 보도(輔導)를 자임하며 한결같이 가까이 모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날부터 가을·겨울에 이르기까지 5~6개월 동안 믿고 의지하시기를 오로지 한 궁관[이창임]으로 연이어 하셨으니, 망부는 장번(長番)[21]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혹 필요할 때가 되면 세자의 글이 연달아

19) 계방(桂坊) : 조선 시대 동궁(東宮)의 시위(侍衛)를 맡아본 관청으로,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를 달리 이르던 말이다.

20) 조유진은 조재호의 백부(伯父)인 조경명(趙景命)의 손자이자 조재호의 4촌 형인 조재건(趙載健)의 계자(繼子)로, 조재호에게는 5촌 조카가 된다.

21) 장번(長番) : 조선 시대 병사(兵使)가 궁중에서 오랫동안 유숙하며 근무하던

이르렀으니, 지금에 이르기까지 자손들이 보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10월 9일에 이르러 세자가 영조를 진현(進見)할 때 영조께서 은혜롭게 칭찬하시기를 더할 나위 없이 하셨습니다. 이에 세자께서 "오늘의 일은 모두 궁관의 공이로다."라고 망부에게 말씀하셨고, 주상전하[영조]와 중전마마께서도 망부에게 술상을 상으로 내리셨습니다. 이는 진실로 우리 장헌세자[사도세자]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다.[22] 마침 그 날 망부가 조정의 반열에 있다가 부친[이춘제(李春躋)]의 병세가 위급하다는 보고를 듣고는 허겁지겁 물러나 간신히 임종 때에야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세자께서 들으시고는 크게 놀라 탄식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인분의 죽음에 대해 진실로 애도하기를 다하노라. 그런데 나는 어진 강관(講官) 한 명을 잃었으니 더욱 애석하도다." 그 후 영조께서는 담기(禫期)[23]를 물어보시고 특별히 관직(館職)을 제수하시면서 또 이 아무개는 진실한 강관이라고 하교하셨으니 또한 장헌세자와 영조께서 알아주시는 성대함이 어떠했는지를 가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녀자와 환시(宦侍)의 구구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일을 말한다.

22) 소론 세력과의 결탁을 위한 사도세자의 관서행 등으로 인해 사도세자와 영조의 사이가 소원해졌을 때 노론에서는 더욱 두 부자 사이를 이간시키려 했으나 이창임은 지극히 효성스런 마음으로 영조를 받들면 천의를 감동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영조 37년(1761년) 10월에 사도세자가 영조께 나아가 뵙기를 청하자 그간 영조는 세자를 보지 않다가 천륜의 정으로 허락한다. 이때 세자가 무슨 복색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자, 홍봉한은 장복(章服)을 갖추고 옥교(玉轎)로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이창임은 오늘 동궁의 행차가 대죄함과 다름이 없으니 포립(布笠)에 백포(白袍)를 입고 작은 가마를 타고 가야 한다고 아뢰었다. 사도세자가 이창임의 말을 옳게 여겨 그 말대로 복색을 갖추고 나아가자 영조는 흡족해하면서 사도세자가 어질다고 여러 번 칭찬하였다. 이에 사도세자가 어전에서 물러나와 오늘 성덕을 입음은 이창임의 덕이라고 치하하였던 것이다.(이에 관한 내용은 이창급, 〈망제신천웅행록〉, 「일와웅유고」, 『이가세고』, p.1364에 상세히 나와 있다).

23) 담기(禫期) : 대상(大喪)을 지낸 그 다음 달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런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전진(前塵)[24]은 사그라져 아득하고, 지난 일은 인멸되어 어둡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없는데도 죄가 추율(追律)에 이르게 되었으니, 처음에는 마음 가득 두렵고 떨리다가 이어서 원통함과 참혹함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만약 끝내 분수와 의리를 두려워해야 한다면, 한을 품은 채 지하에 돌아가는 것을 면할 수 없으니 장차 죽은 남편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에 감히 부월에 목 베이기를 피하지 않고 주상전하께서 들으시도록 우러러 읽습니다. 저는 지극한 원통함을 마음에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말로 잘 옮길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하는 바의 허실인즉, 당일 기록한 의금부의 친국 문안에 있습니다. 진실로 한 터럭이라도 꾸미는 말이 있다면 비록 저희 일가 모두가 목이 베어져 멸족당하는 지경에 이르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엎드려 천지부모께 비옵니다. 만물을 비추는 덕을 지극히 넓게 하시고 굽은 것을 바르게 펴는 정치를 특별히 유념하시어 일개 외로운 혼으로 하여금 답답한 마음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만 된다면 살아서는 목숨을 버리고 죽어서는 풀을 맺어서라도 은혜를 갚겠습니다. 8월 초하루 주상전하께서 원릉으로 행차하시는 길에 상언하였다. 2일 주상전하께 입계(入啓)[25]하자 모두 즉시 재가를 받았다. 이 상언은 5일 밤 영사(令司)가 알현하면서 입으로 전하였는데, "이 상언에 어찌 '외(猥)'라는 글자를 썼느냐?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행해질 일이니 '외(猥)'라는 글자를 칼로 도려내라."라고 하교하시면서 해당 관아에 회계(回啓)[26]할 것을 즉시 명령하셨다. 대개 입계할 때에 승지 가운데 누가 '외(猥)'

24) 전진(前塵) : 불교 용어로 망심(妄心) 앞에 현존하는 육진(六塵)을 말한다. 육진은 곧 인간의 본성을 흐리게 하는 색(色)·성(聲)·향(香)·미(味)·촉(觸)·법(法)의 여섯 가지 욕정을 말한다.

25) 입계(入啓) : 임금에게 상주(上奏)하는 글월을 올리는 것을 말한다.

26) 회계(回啓) : 임금의 하문(下問)에 대하여 심의하여 상주(上奏)하는 것을 말한다.

자를 썼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모든 관원들이 마땅히 받들어 올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입계할 때에 사리에 합당하다고 여겨 칼로 도려내지 않았다는 것을 잊었다고들 한다. 5일 숙직한 승지는 윤우렬·김회연이었다.[27]

---

27) "右謹啓臣女矣身殷, 臣女矣身以亡夫被罪事, 抱窮天極地之痛者, 許多年所而尙不能一言仰暴者, 誠以先大王至仁至明之德, 無微不燭無物不遂, 則畢竟覆盆之照, 晝宵泣禱. / 果於庚申春, 亡夫之兄前承旨臣昌伋, 歲抄單子至, 敎以尙在不爲擧論中, 特命蕩滌敍用, 前後筵敎, 逈出尋常, 照燭之明, 至及本事, 則昭晰之恩, 若在朝夕, 幽明感結, 闔門攢祝, 千萬不意, 遽遭六月崩坼之變, 公私之痛, 百倍常人, 而泉下冤魂, 亦將無仰望之所矣. / 仍又自念, 臣女矣身年迫八十, 奄奄垂盡, 終不得一番嗚號, 則誠恐事屬先天, 世無知者, 雖以我主上殿下, 天地之大, 日月之明, 何從以俯燭其萬一乎? 言念及此, 益不勝臆塞, 而籲天路阻, / 乃於壬戌春呈書相府, 則故領議政臣沈煥之·左議政臣李時秀·右議政臣徐龍輔, 卽日受單子, 與時原任輪覽, 而以爲旣係至冤事, 宜陳達云, 故每於賓對日, 躬進闕門之外, 泣乞于相臣造朝之路矣. / 逮至癸亥正月餘慶之時, 自上特軫匹婦之冤, 至詢闕外之轎, 德意洋溢, 昊天罔極. 適其時闕外轎子盖有二焉, 而大臣承上敎, 取覽其原情, 一則以猥越曉諭退之. 至於臣女矣身所呈單子, 以前日所受也, 使之依前, 還置于籌司云, / 而今至三年, 尙無進退, 此莫非身女矣身罪, 通神明誠, 未格孚之致. 而積年冤恨之一暴, 此生此世永斷其望, 今幸須臾無死, 連値郊幸, 又敢以呈于相府者, 冒死呼籲於法駕之前. / 往在丙申亡夫以宦招事被罪, 盖玉堂鄭元始等, 以故大司諫李昌任, 身爲朝士, 名出宦招, 其在嚴懲討之意, 不可以身故而不論, 陳所懷請追奪. 判付中以德成閤入對時, 賁敎旣在於伴僚維鎭之際, 爲敎而依其啓. / 以言乎宦招則壽賢供辭中, 十餘年前興祿所謂某某可用者, 公卿大夫厥數許多 宋載經·金尙默·蔡濟恭·沈履之·趙宗鉉, 同出其招, 亡夫之名, 亦在其中, 而或不入訊庭, 自歸脫空, 或暫經逮問, 旋蒙宥釋, 某也某也, 無一枉罹, 爵秩如故, 身名俱全, / 而亡夫之旣無明證, 獨添罪案, 只緣身故無徵, 而特以鄭元始輩, 乘機受噱, 以爲擠陷也. 當初妖竪云云, 專出於籍, 賁朝紳, 圖取寵利之計, 則憯慝巧惡, / 已莫逃於淵鑑之下, 故至亡夫姓名, 而又下予不信之敎, 則雖使亡夫自明, 無以過此, 寧不感泣於冥冥乎? 若其怪鬼輩之締結, 實在丙申, 而亡夫則自癸巳, 待罪外邑, 已先作故, 此則初非可論以言乎? / 賁敎則似爲罪名之肯綮, 而辛巳夏, 亡夫以宮官入對時, 下令曰 : '亟往春川, 勸起趙判府也.' 對曰: '臣何以去乎?' 令曰: '何憚去乎?' 仍賁敎嚴重, 對曰: '君命所在, 夷險何擇, 而單宮官之奉令出外, 而不辭大朝, 恐涉如何矣?' 令曰: '果然矣, 果然矣.' 仍命送桂坊趙維鎭, 以其爲從子, 而且是蔭官也. 當初激惱, 縱緣辭未達意, 旋復渙釋, 仰認諒, 其無他也. / 始末不過如斯, 則一言以蔽曰, 亡夫若犯罔赦之罪, 則自上豈不嚴處於當日, 而反益眷愛, 隨事顧問? 卽席未承回悟之敎, 則宮官亦何敢仍居於本職, 而自任輔導, 一直近侍也? / 自其日至秋冬, 凡五六朔倚毗, 實專連以單宮

〈이조회계(吏曹回啓)〉[28]

고(故) 급제 이창임의 처 윤씨가 그 남편을 위하여 원통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 요지인즉 두 가지 조목을 벗어나지 않으니, 하나는 환관이 공초(供招)한 일이고 또 하나는 덕성합께서 책교(責敎)한 일입니다.

환관의 공초에 대해 말하자면, 거기에 거론된 조정선비들이 많았으나 혹 스스로 죄에서 벗어나고 혹 잠시 심문을 받았으나 사면되어 조금도 억울하게 죄명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창임만이 유독 작고한 몸으로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기에 정원시 무리에게 모함을 입어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일 기록한 의금부의 친국 문안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친국 문안을 기록하는 것은 사체가 엄중하고 비밀

官, 無異長番. 或値須資時, 則睿翰又復聯翩, 至今爲子孫宝藏. / 及至十月九日進見時, 而恩褒又曠絶, 若曰: '今日之事, 都是宮官之功.' 賞賜兩殿宣醞床, 此實我莊獻世子之恩綸也, 竟以其日班次, 聞親病急報, 蒼黃經退, 圭及屬纊, 世子聞而大加驚歎曰: '耆耉之喪, 固所悼盡, 而予之失一賢講官, 尤可惜也.' 其後英廟之詢問禫期, 特除館職也, 又有李某眞講官之敎, 則亦可想兩朝受知之盛, 有非區區婦寺之忠, / 而到今前塵寢遠, 往事湮晦, 九原難作, 罪至追律, 初旣滿心惶慄, 繼又刻骨冤酷, 若終怵分畏義, 未免爨恨就盡, 則將無以歸見亡夫. / 玆敢不避鈇鉞之誅, 仰讀鉏耰之聽. 臣女矣身, 雖至痛在心, 言不知裁, 而若其所言之虛實, 當日記注, 王府鞫案在焉, 苟有一毫餘辭, 則一家百口, 雖盡就湛滅之誅, 固所甘心, 伏乞天地父母, 亟恢容光之照, 特軫伸枉之政, 俾一介孤魂獲洩幽鬱, 則生當捐首, 死當結艸云云. 八月初一日元陵行幸上言. 二日入啓諸上言. 皆卽啓下. 此上言. 初五日夜. 令司謁口傳. 下敎曰: '此上言何爲書猥字乎? 此是依法當爲之事, 猥字刀劑.' 卽令該曹回啓. 盖入啓時. 未知承旨中. 誰某已書猥字. 諸員皆以當捧爲言. 以入啓停當. 而忘未刀劑云. 初五日坐直承旨. 尹羽烈 · 金會淵."(〈을축상언〉, 「수목수초」, 『이가세고』, pp.1784~1786).

28)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세주(細主)가 붙어 있다. "판서 황승원이 의리를 좇아 처리하려 했으나 공무를 집행할 수는 없었다. 그 뒤에 이익모가 판서가 되어 10월 27일에 회계하였다.(判書黃昇源引義, 不得行公, 其後李翊模爲判書, 十月二十七日回啓)"

스러워야 하므로 그것을 참고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책망하는 하교에 대해 말하자면, 당초 덕성합께서 매우 진노하신 것은 비록 말이 그 뜻을 다하지 못 했기 때문이지만, 곧 깨달으시어 진노한 모습이 얼음 녹듯 풀어지셨으니 우러러 어지심을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이 조리가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선조께서 윤허하실 때 매우 엄중하고 단호하셨으니 이 또한 조마조마하면서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상부에서 단자를 받은 것은 어떠한 연고인지 모르겠습니다. 혹 참작하는 도리가 있으나, 제가 속한 부서에서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기에 곧 대신들에게 의논하였으니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겠습니까? 그믐날 회계에 의거하여 윤허한 일을 시행하다.[29]

3

앞서 제시한 〈을축상언〉은 1805년 8월 순조가 원릉(元陵)으로 행행(行幸)할 때 올린 것으로, 해평윤씨가 팔십에 가깝도록 죽은 남편의 신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신원을 바라는 간절한 읍소

29) "云云故及第李昌任之妻尹氏, 爲其夫訟寃, 其要不出二條. 一則宦招事也 ,一則責敎事也. / 以宦招言之, 所引朝士甚衆, 而或自歸脫空, 或暫迅旋宥, 無一枉罹, 而昌任獨以身故無徵之, 故爲鄭元始輩所擠陷云, 而以當日記注王府鞫案爲證, 然而記注鞫案事體嚴秘, 不可以取考. 以責敎言之, 當初激惱, 縱緣辭未達意, 旋復渙釋, 仰認諒其無他云, / 而縷縷分疏, 似有條理, 然而先朝判付, 至爲嚴截, 此不可不兢兢致愼, 而相府之受單, 抑未知其何故, 或者有參量之道, 而然自臣曹不敢擅, 便議于大臣, 處之何如? 晦日依回啓. 施行事判下."(〈이조회계〉, 「수목수초」, 『이가세고』, p.1786).

(泣訴)를 담고 있다. "자세하게 조목조목 나누어 설명한 것이 조리가 있는 듯합니다."라는 〈이조회계〉에서의 지적대로, 죽은 남편이 1776년 병신년에 죄에 걸리게 된 원인을 환관 김수현의 공초에 관련된 일과 사도세자의 꾸짖는 하교 두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둘 다 매우 억울한 것임을 일일이 밝히면서 순조가 밝은 판결을 내려주기를 청원(請願)하고 있다. "우리당의 큰 노인 명재 윤선생[윤증(尹拯)]"[30]이라는 구절에서 볼 수 있듯 해평윤씨의 시댁인 전주이씨 가문은 소론인데, 당시 당파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남편은 억울하게 희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김수현의 공초에 남편의 이름이 들어간 것에 대해 해평윤씨는 다음과 같이 억울함을 하소연한다. 이 당시 김수현의 환초사(宦抄事)란 이덕사(李德師)·조재한(趙載翰) 등이 임오년의 일[임오화변]을 징토한다는 핑계로 환관(宦官)인 이흥록(李興祿)·김수현(金壽賢) 등과 결탁한 후 정조가 춘저에 있을 때부터 이 사실을 자주 환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영조가 승하하자 시골 유생 이일화(李一和)를 시켜 상소하여 임오년 일을 다시 말하게 함에, 그들의 간악상을 알고 마음속으로 미워한 정조가 이들을 선왕[영조]를 무함한 역적이라면서 친국하게 되는 사건을 말한다. 이 때 김수현의 공초에서 이창임의 이름이 나옴으로써 그 또한 이 일에 연루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공초에는 송재경·김상묵·채제공·심이지·조종현 등 숱한 조정 관리들이 거론되었으나 그 중 일부는 심문도 받지 않고 죄에서 벗어났고 그 중 일부는 잠시 심문을 받더라도 곧바로 풀려나 복직되어 몸과 명예가 모두 온전한데, 자신의 남편만이 죽은 몸으로 결백을 증명할 길 없어

30) "吾黨大老, 明齋尹先生."(이창급, 〈동주기행(東舟記行)〉, 「일와옹유고」, 『이가세고』, p.1629).

억울하게 죄명을 뒤집어 쓴 채 지금까지도 신원되지 못 하고 있다고 해평윤씨는 토로하고 있다.

특히 병신년의 이러한 옥사(獄事)에 대해 해평윤씨는 정원시 등이 홍국영의 사주를 받아 자신의 남편을 함정에 밀어 넣은 것이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병신년 봄 환옥시에 평일 홍국영에게 미움을 받은 일로 인해 무고를 당하고 독수에 걸리게 되었다. 또한 정원시 일파가 이 기회를 타 함정에 밀어 넣음에 추국당하는 형국에 이르게 되었다."[31] 는 또 다른 글의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 자신의 남편이 추국당하게 된 원인을 홍국영 일파의 모함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홍국영과 사이가 좋지 않아 홍국영 일파로부터 모함을 받았다고 보는 입장은 이창임의 형인 이창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 매번 서유신(徐有臣)·이의봉(李義鳳)·이의준(李義駿) 등과 더불어 교제하며 힘써 권면하기를 "세자를 보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일에 따라 선을 힘쓰시고 악을 멀리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찌 우리의 책임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논의와 출처가 서로 뜻이 같았다. 이때 간신 홍국영이 동료로서 총애를 믿고 세력을 필아 청요직(淸要職)을 공을 위해서 힘써 주선하고자 하였으나 공이 답변하지 않았다. 홍국영이 후에 과연 권력을 잡았으나 공은 서주에 있으면서 또한 한 번도 편지로 안부를 묻지 않았다. 홍국영이 마음으로 매우 분해하였다. 병신년의 화가 일어남에 미쳐 공과 서공(徐有臣), 이공(李義駿·李義駿) 등이 서로 이어서 쫓겨났다. (……) 옥당 정원시(鄭元始)·엄사만(嚴思晩)의 무리들이 그 뜻[홍국영의 뜻]을 이어 모씨[이창임]의 형이 된 자로서 편안히 관직에 있을 수 없다 하여 삭직하기를 청하였다.[32]

---

31) "丙申春, 宦獄時, 以平日積忤於洪國榮, 被誣罹毒. 又爲鄭元始輩, 乘機擠陷, 至蒙追勘之典."(〈십이세신천옹공사적기략〉, 『완산이씨가승』, 302장 뒷면).

32) "每與徐公有臣·李公義駿·義駿, 互相交勉曰: '殫誠輔導, 隨事獻替, 豈非

정조 즉위년인 1776년은 홍국영이 도승지로 부임하여 세력을 잡는 때인데, 이 때 자신의 집안이 홍국영과 사이가 좋지 못한 관계로 이들 일파에게 모함을 당한 것이라면서 해평윤씨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도세자가 이창임을 꾸짖는 하교에 대해서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입증하려 하고 있다. 이창임에게 "역적이고 소인이다."라고 꾸짖은 사도세자의 하교가 이창임이 죄명을 입은 관건이 되고 있으나, 그것은 진노했을 때 잠시 나온 말일 뿐이고 사도세자가 평소에 얼마나 이창임을 신임했던가를 조목조목 설명한다.

영조 37년인 1761년 사도세자가 노론의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당시 춘천에 가 있던 조재호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소론의 거두라 할 수 있는 조재호는 좌의정을 지낸 바 있는 조문명(趙文命)의 아들이며, 영조의 왕세자빈이었던 효장세자빈의 동생이자, 영조조의 탕평책의 거두였던 조현명(趙顯命)의 조카로, 등과한 지 10년만에 정승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사도세자를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다가 노론 세력에 밀려 위기를 맞자 스스로 정승의 자리에서 물러나 춘천에 은거하고 있었던 것이다. 소론 세력과의 결탁을 위해 관서에 갔던 일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도세자가 이창임에게 춘천에 다녀오도록 하였는데, 이창임이 가지 못 하겠다고 하자 사도세자가 이창임에게 버럭 화를 내게 되었던 것이다. 이창임은 춘방인 자신이 영조에게 말을 하지 않고 외방으로 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않

吾輩之責乎?' 言議出處, 相與之同, 時倖臣洪國榮, 以僚家怙寵賣勢, 淸要之職, 欲爲公宣力, 公不答之, 其後果秉國, 而公在西州, 亦不爲一書相問, 國榮心甚銜之, 及至丙申禍作, 公與徐·李諸公, 相繼擯逐. (……) 玉堂鄭元始·嚴思晩輩, 承其志以爲某之兄, 不可晏然在官, 請削版."(〈일와옹공행장(一臥翁公行狀)〉, 『완산이씨가승』, 269장 뒷면).

은 일에 관계될 수 있다며 다른 사람을 보낼 것을 청하자, 전후의 사연을 들은 사도세자는 곧 이창임의 의견이 옳다고 인정해 주었으니 그 밖에 다른 내용은 아니었다고 토로한다.

더욱이 평소 이창임에 대한 사도세자의 신임이 얼마나 대단했던가를 상세히 나열한다. 다른 궁관을 두지 않고 연이어서 이창임만을 두었기에 이창임은 마치 궁궐에 계속 머물면서 궁궐을 지키는 병사와 다름없었던 점, 이창임이 부친상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되자 사도세자가 어진 궁관을 잃게 된 것을 안타까워한 점 등에 대해 밝히고 있다. 특히 사도세자가 1761년 10월에 영조께 나아가 뵙기를 청하자 그간 영조는 세자의 관서행 등으로 인해 세자를 보지 않다가 천륜의 정으로 허락하는데, 이 때 세자가 무슨 복색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묻자 홍봉한은 장복(章服)을 갖추고 옥교(玉轎)로 나아감이 마땅하다고 했으나 옆에 있던 이창임은 오늘 동궁의 행차가 대죄(待罪)함과 다름이 없으니 포립(布笠)에 백포(白袍)를 입고 작은 가마를 타고 가야 한다고 아뢴다. 사도세자가 이창임의 말을 옳게 여겨 그 말대로 복색을 갖추고 나아가니 영조는 흡족해하면서 사도세자가 어질다고 여러 번 칭찬한다. 이에 사도세자는 이창임에게 큰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된다. 평소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도세자의 신뢰가 이처럼 지극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고려하지 않고 잠시 내린 책교(責敎)를 기준으로 자신의 남편을 평가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를 해평윤씨는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해평윤씨는 남편과 관련한 당대 정치적 사안들을 상세히 알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남편의 억울함을 하나하나 밝히고 있다. 특히 "매번 빈대(賓對) 날에는 몸소 궐문 밖에 나아가 재상들에게 조정으로 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주기를 울면서 애걸하였습니다.

계해년(순조 3년 · 1803년) 정월에 이르러 경사를 축하하는 때 주상전하께서는 특별히 필부(匹婦)의 원통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궐 밖에 있는 가마에 이르러 물어보셨습니다."라는 대목에서 볼 수 있듯, 해평윤씨는 본인이 직접 대궐문에 나아가 상언할 기회를 기다리는 등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을축상언〉뿐만 아니라 〈병인상언〉, 〈정묘상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녀가 몸소 대궐문에서 순조가 교외로 행차하기를 기다렸다가 올린 것으로 나와 있다. 자신의 남편이 역모죄에 소급된 후 30여 년 동안 남편이 신원되기를 간절히 바랐던 해평윤씨로서는 당대의 정치적 상황에 촉각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고 또 몸소 임금에게 상언하는 등 정치적인 일에 끼어들지 않을 수 없었던 저간의 상황을 잘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글들이 해평윤씨의 양자(養子)인 이선정(李宣鼎)의 문집 「수목수초(水目收草)」에 실려 있는 점, "해평윤씨를 대신하여 짓다"[33]라는 구절이 그 밖의 다른 글에서 보이는 점 등을 통해 볼 때, 그녀가 직접 한문으로 썼다기보다는 그녀가 구술하거나 언문으로 쓴 것을 자식 혹은 조카들이 한문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높다. 혹은 처음부터 그들 스스로 한문으로 썼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해평윤씨 또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러한 글쓰기에 참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평윤씨는 남편이 죽은 뒤부터 글을 쓰면서 소일하였고, 이런 과정에서 〈백계양문선행록(伯季兩門善行錄)〉이라는 거질(巨帙)의 대하장편소설을 저술한 역량 있는 여성문사이기 때문이다.[34]

---

33) "代叔母淑夫人海平尹氏作."(이헌정, 〈정주사서(呈籌司書)〉, 「필천수습」, 『이가세고』, p.1805).

34) 이에 대해서는 졸고,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 - 전주이씨 가문 여성의 대하소설 창작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pp.329~361에서 상론한 바 있다.

중요한 점은 해평윤씨가 스스로 글을 썼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가 직접 임금에게 글을 세 번씩이나 올렸다는 사실이다.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정치참여는 극히 금기시되는 것이었지만 격동의 시대인 조선후기 사회에서는 여성이 정치적 일에 관여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기 집안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위해 상언하는 등의 일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35] 해평윤씨는 꺼져가는 집안을 되살리기 위해 팔십의 노령에도 불구하고 - 오히려 이것을 하나의 명분으로 삼아 - 여성으로서 임금 앞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다.[36]

35) 최근 소개된 김씨부인의 국문 상언 또한 18세기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개 아녀자였던 광산김씨가 자신의 손자와 시동생을 구하기 위해 정치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잘 보여준다.(임형택, 「김씨부인의 국문상언 - 그 역사적 경위와 문학적 읽기」,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pp.358~381에서 상세히 논한 바 있다).

36) 이창임은 순조 9년(1809년)에 결국 신원된다. 여기에는 해평윤씨의 상언이 큰 몫을 했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